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15. 3. .
제 출 자: 청소행정과장

1. 제안이유

가. 현행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세입 조치 없이 대행업체 운영비로 충당)는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종량제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16년 부터 종량제 수수료를 예산에 편입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위반을 해소하고자 함.

나. 우리 구의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는 수년간 동결되었으나 쓰레기 처리 비용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처리 수수료 부과로 원천 감량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 마련 (안 제29조제1항)

나. 종량제봉투 가격을 서울시 표준안(공통가격)에 의거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15. 3. 12. ~ 4. 1.

2) 규제심사: 규제개혁담당관

3)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4) 성별영향분석평가: 보육가족과

5)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한”을 “위임된”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며, 그 처리비는 구에서 부담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중량제봉투 가격표(제16조제2항 관련)

[일반중량제봉투 가격]

(단위: 원)

구 분	가정용 판매가격		영업장용 판매가격		사업장용 판매가격	
	2015년	2017년부터	2015년	2017년부터	2015년	2017년부터
5리터	120	130				
10리터	220	250				
20리터	440	490	470	520	720	800
30리터	660	740	700	780		
50리터	1,100	1,250	1,200	1,330	1,800	2,000
75리터			1,800	2,000		
100리터			2,400	2,680	3,600	4,000

[특수중량제봉투 가격]

(단위: 원)

용 량	판 매 가 격	
	2015년	2017년부터
50리터	4,590	5,1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u>위임한 사항</u>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u>위임된</u> ----- ----- --.</p>
<p>제29조(수수료 등의 세입 및 처리비 부담) ① <u>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하며, 폐기물의 처리비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부담하는 반입수수료를 봉투 가격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생략)</p>	<p>제29조(수수료 등의 세입 및 처리비 부담) ① <u>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며, 그 처리비는 구에서 부담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3]

중량제봉투 가격표(제16조제2항 관련)

[일반중량제봉투 가격]

(단위: 원)

구 분	가정용 판매가격	영업장용 판매가격	사업장용 판매가격
10ℓ	180		
20ℓ	350	470	480
30ℓ	520	700	
50ℓ	860	1,160	1,210
75ℓ		1,740	
100ℓ		2,330	2,420

[특수중량제봉투 가격]

(단위: 원)

용 량	판 매 가 격
50ℓ	2,790

[별표 3]

중량제봉투 가격표(제16조제2항 관련)

[일반중량제봉투 가격]

(단위: 원)

구 분	가정용 판매가격		영업장용 판매가격		사업장용 판매가격	
	2015년	2017년부터	2015년	2017년부터	2015년	2017년부터
5리터	120	130				
10리터	220	250				
20리터	440	490	470	520	720	800
30리터	660	740	700	780		
50리터	1,100	1,250	1,200	1,330	1,800	2,000
75리터			1,800	2,000		
100리터			2,400	2,680	3,600	4,000

[특수중량제봉투 가격]

(단위: 원)

용 량	판 매 가 격	
	2015년	2017년부터
50리터	4,590	5,100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종량제 수수료의 예산편입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재정법 위반을 해소하고,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는 안으로 이로 인해 특별한 비용발생사항은 없으므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청소행정과 청소작업팀 이승근
연 락 처	2286 - 5530